제 142 호
2021-1호
(2021.01.19)

KLSI

ISSUE PAPER

www.klsi.org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목차]

1. 들어가며
2. 국내 이주노동자 체류자격과 체류현황
3. 고용허가제 주요 내용과 쟁점
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19) 분석 결과
5. 소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lsi.org/

〈요 약〉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이주노동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하여 2019년 약 3만 4,586명이 감소하였음. 비전문취업(E-9)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방문취업(H-2)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0.3%, 여성 39.7%임.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임. 한편 결혼이민(F-6)은 여성 81.5%, 남성 18.5%임. 즉,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5년 체류자격별 미등록체류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증면제(B-1) 비율이 가장 높고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비전문취업 미등록체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일반연수(D-4) 등 단기비자를 통해 취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고용허가제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 증가의 원인이 되는 한편, 단기비자를 통해 미등록체류자가 유입되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비합법 노동시장 문제도 존재함. 즉, 이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체류자와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이주노동자의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 다양함. 비전문취업의 경우 기숙사(47.7%)와 기타(31.5%)가 대부분이고, 점유형태는 무상(84.7%)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의 특징과 닿아있음. 방문취업은 일반주택(84.9%)

과 점유형태는 전세, 월세(84.9%)의 비율이 높음.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지(76.1%)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7%)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임.

○ 종사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81.6%)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12.9%) 〉 건설업(3%) 〉 도소매, 음식, 숙박(1.4%) 등 순임. 방문취업의 경우 건설업(29.6%) 〉 광제조업(28.7%) 〉 도소매, 음식, 숙박(26.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13.5%)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종사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방문취업은 분야에 따른 제약이 덜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한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근무지역은 전반적으로 경기(44.5%) 비율이 높은 가운데, 비전문취업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15.8%)과 대전, 충남, 충북, 세종(14.7%)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문취업은 서울(24.4%)이 높은 편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광주, 전남, 전북(26.3%)과 경기(24.3%)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경기(46.5%)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및 대전, 충남, 충북, 세종(15.1%)임. 건설업(48.6%)과 도소매, 음식, 숙박(46.3%) 역시 경기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장 규모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명-29명(39.9%) 〉 5명-9명(20.8%) 〉 50명-599명(16.3%)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10명-29명(29%) 〉 5명-9명(24.6%) 〉 4명 이하(20.9%) 등 순임. 방문취업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20.9%)이 높은 편임.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4%)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30%-50% 미만(31.8%) 〉 10%-30% 미만(20.6%) 〉 50%-80% 미만(20.3%) 순으로 나타났음. 비전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29.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없음”은 3%에 불과함.

○ 주당 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1.9%)이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26.9%) 〉 60시간 이상(15.2%) 등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비전문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34.2%)이 매우 높음.

- 주업에서의 노동시간과 부업에서의 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결과이지만, 특히 비전문취

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현재 담당업무 직무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65.7%) 〉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28.7%)”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1.6%)” 등 순임.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9)」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주로 채용이 이루지는 바,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내국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일자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64.9%) 〉 국민연금(60.5%) 〉 산재보험(22.3%) 〉 건강보험(16.3%) 순임. “가입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이거나(고용보험) 상호주의(국민연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비전문취업보다 방문취업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함(전체 8.8%, 비전문취업 3.5%, 방문취업 15.7%).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38.3%)과 비전문취업(49.1%) 모두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이 확인됨.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각국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님. 국가인권위원회(2020)에 의하면 이주민 10명 중 약 7명(73.8%)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 마스크 구입 배제(16.6%)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을 당했음.

- 산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우려하는 한편,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또다시 가시화 됐음.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미 담지하고 있던 위험 중 하나였음.

○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농

가 산재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의무가입, 그리고 이주노동자 취업활동 기간 일시적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발표했음. 정책적 논의의 흐름이 "인력이 모자란 산업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의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한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와 개입이 필요함.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의 현황
- 비전문취업자(E-9), 방문취업자(H-2)를 중심으로 -

윤자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 인력 '송출국'이었던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3저 호황과 제조업 분야 노동력 부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수신국'으로 전환됨.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1]라는 타자를 맞이하게 된 지 30여년이 지났음.

- 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1980년대 후반 맞이한 3저 호황과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임.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1991년)와 연결됨.
- 다른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자본과 노동력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 것임.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조금 개선된, '고용허가제' 도입 및 시행(2004년 시행)의 배경이 되었음.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임.

-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들이 기피하는(혹은 기피한다고 알려진) 3D 업종(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에 종사하고 있음. 이주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 발생률은 내국인 노동자의 6.4배에 이르고 있어 '위험의 이주(노동자)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2].
- 언론 및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열악한 거주 환경 및 생활 환경 문제, 내국인노동자와의 차별 문제, 그리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중층적인 차별 문제와 성폭력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이창원, 2015; 장명선, 2016; 이주와인권연구소, 2018).
- 이렇듯 이주노동자가 처한 다차원적인 노동권 및 인권침해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비해,

1)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뜻하는 법률 용어는 '외국인 근로자'이나 이 글에서는 호칭을 모두 '이주노동자'로 통일함.
2) 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5년간 60% 증가…일터 옮길 자유 달라", 2019.10.20.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이 글에서는 우선 국내 이주노동자 체류현황과 체류자격을 파악하고,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소개함. 그 후 이주노동자 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하고자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19)」 중 '비전문취업자(E-9)'와 '방문취업자(H-2)'를 분석함.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함의와 국내 이주노동자 인권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내 이주노동자 체류자격과 체류현황

1) 체류자격

○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①단순기능 이주노동자 ②전문기술 이주노동자 ③기타 취업가능 이주노동자로 구분됨(김성률·이원식, 2017). 이 글에서는 '단순기능 이주노동자' 중 비전문취업자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다룸.

○ 단순기능 이주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한 경우임.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 적용을 받음.[3)]

- 외국인고용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며[4)], 취업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최대 2년 간 고용연장이 가능함(「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며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표 1〉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 단순기능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 범위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

3) 선원취업(E-10)의 경우, 20톤 이상 연근해 어선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선원법」에 의한 '외국인선원제' 적용을 받음. 고용허가제 적용 인력과 외국인선원제 적용 인력은 모집 과정과 자격 등이 다르며, 각 제도의 주무부처와 운용기관이 달라 어업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빚고 있음(최서리. 2018).

4) EPS 외국인고용지원 홈페이지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GuidLabor)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 범위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②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④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⑤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등 나. 활동범위: ①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②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직업안정기관의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 범위에서 취업 가능)
선원취업 (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중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출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 및 별표1의2

○ 전문기술 이주노동자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등으로 체류자격이 주어진 자임.

- 전문기술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고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주와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비자발급이 가능함(조성혜, 2019).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됨. 또한, 단순기능 노동자에 비해 거주(F-2) 및 영주(F-5) 체류자격 및 특별귀화에 있어서 혜택을 받음(차용호, 2017).[5)]

〈표 2〉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 전문인력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 범위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자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자

5) 전문인력은 거주(F-2) 자격 신청 요건 중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우수인재"에 해당되는데, 연속 합법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4천 만 원 이상인 경우임. 또한 예술흥행(E-6)을 제외하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F-5) 자격이 주어짐.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 범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밖에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교수(E-1)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출처:「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별표1 및 별표1의2

○ 마지막으로 기타 취업가능 이주노동자는 90일 이하 단기취업(C-4)과 관광취업(H-1) 외, 정주의 기회 및 권리를 지닌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구성됨.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의 경우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단, 재외동포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 유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활동이 제한됨.

〈표 3〉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 기타 취업가능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 범위
단기취업 (C-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관광취업 (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해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

출처:「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별표1 및 별표1의2

2) 체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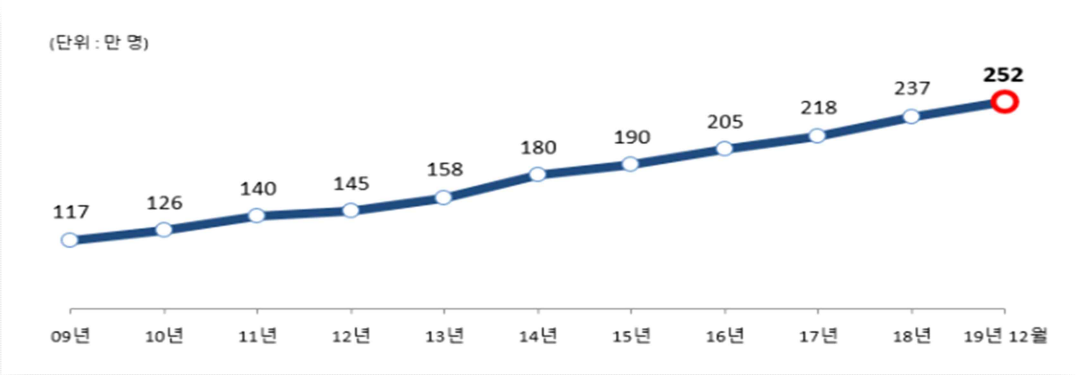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2019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남성은 53.3%(1,346,134명)이고, 여성은 46.7%(1,178,521명)임. 체류 외국인 중 여성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2011년 44.1%

→2019년 46.7%).[6]

- 최근 10년간 체류 외국인의 증감 추이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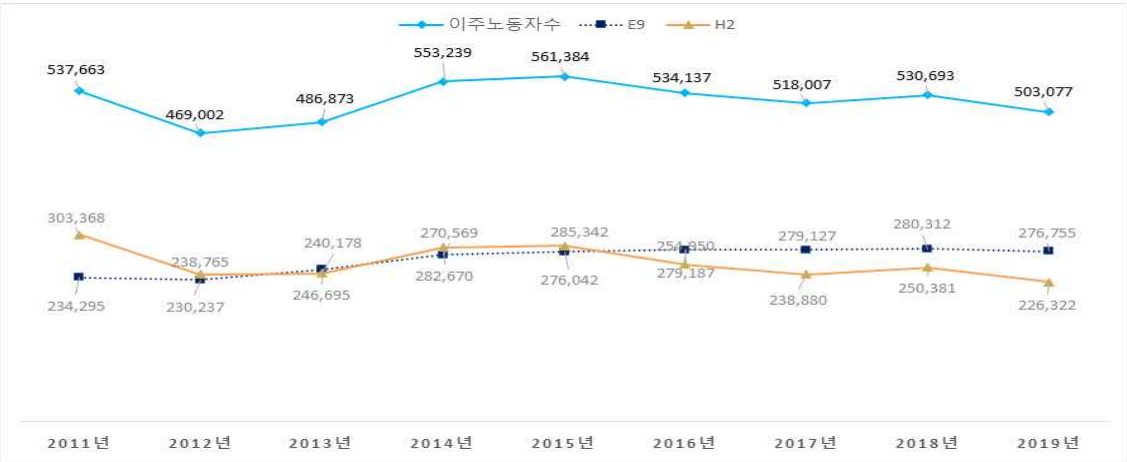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2009년~2019년 12월)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9),「통계월보(2019.12.)」p. 13

○ 2019년 기준 이주노동자 수는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3만 4,586명이 감소했음. 비전문취업(E-9)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방문취업(H-2)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그림 2]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 추이 (2011년~2019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각 년도

6) 체류 외국인 현황: 성별 (2011~2019)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남성	779,746	797,068	870,176	994,214	1,044,986	1,117,206	1,191,294	1,288,847	1,346,134
여성	615,331	648,035	705,858	803,404	854,533	932,235	989,204	1,078,760	1,178,521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통계연보」, 각 년도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0.3%, 여성 39.7%임.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의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임.

- 한편 결혼이민(F-6)은 여성 81.5%, 남성 18.5%임. 즉,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라 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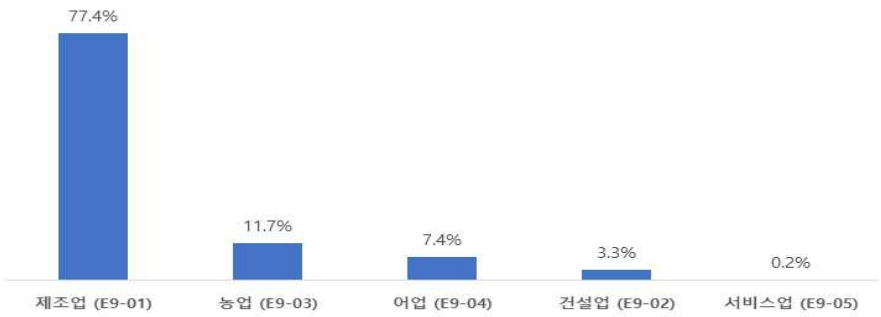
〈표 4〉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19) - 상위 10개

	인원 (명)			비중 (%)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전체	1,346,134	1,178,521	2,524,656	53.3%	46.7%	100.0%
F4(재외동포)	222,007	242,145	464,152	47.8%	52.2%	100.0%
E9(비전문취업)	253,848	22,907	276,755	91.7%	8.3%	100.0%
C3(단기방문)	134,278	122,418	256,696	52.3%	47.7%	100.0%
B1(사증면제)	119,898	128,855	248,753	48.2%	51.8%	100.0%
H2(방문취업)	136,533	89,789	226,322	60.3%	39.7%	100.0%
B2(관광통과)*	88,079	116,461	204,541	43.1%	56.9%	100.0%
F5(영주)	69,780	83,511	153,291	45.5%	54.5%	100.0%
F6(결혼이민)	24,248	106,786	131,034	18.5%	81.5%	100.0%
F1(방문동거)	49,756	73,130	122,886	40.5%	59.5%	100.0%
D2(유학)	51,376	66,878	118,254	43.4%	56.6%	100.0%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통계연보(2019)
* 제3의성1명 포함

○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현황[7]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77.4%) 〉 농업(11%.7) 〉 어업(7.4%) 〉 건설업(3.3%) 등 순임.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양상임(〈표 5〉 참조). 대부분 남성 비중이 90%가 넘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은 여성 비중이 약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현황(2019) - 업종별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20), 「통계연보(2019)

7)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발급받음(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표 5〉 고용허가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현황 (2015, 2018)

	2015년			2019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전체	51,191	4,642	55,857	49,320	3,798	53,118
제조업(E-9-1)	41,955	2,470	44,443	39,288	1,834	41,122
농업(E-9-3)	3,367	2,156	5,524	4,244	1,962	6,206
어업(E-9-4)	2,795	3	2,803	3,946	2	3,948
건설업(E-9-2)	2,379	0	2,379	1,741		1,741
서비스업(E-9-5)	71	2	73	101		101
축산업(E-9-8)	624	11	63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 년도

○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슈 중 '불법체류자(불체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임.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는 △단속추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미등록'이라는 상황에 따른 저임금,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문제, △열악한 일자리에 미등록 노동자를 채워 넣음으로써 지연되는 일자리 개선과 이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 등의 문제와 연결됨(정영섭, 2019).

- 2019년 기준 미등록체류자는 390,281명이고, 전체 체류외국인 중 15.5% 비율임. 미등록체류자 비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3.5%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 체류외국인 및 미등록체류자 추이 (2015~2019)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체류외국인 수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미등록 체류자 수	214,168 (11.3%)	208,971 (10.2%)	251,041 (11.5%)	355,126 (15.0%)	390,281 (15.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 년도

- 2019년 기준 미등록 이주노동자(비전문+방문)는 48,217명이고,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중 9.6%가 미등록 상태임.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미등록체류자 비율(15.5%)에 비해 약 5.9%p 낮음. 방문취업(0.9%)보다는 비전문취업에서 미등록체류자 비율(8.9%)이 높음.

〈표 7〉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추이 (2015~2019)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전문취업(E-9)	276,042	279,187	279,127	280,312	276,755
미등록 비전문취업	49,272 (17.8%)	45,567 (16.3%)	46,618 (16.7%)	47,373 (16.9%)	46,122 (16.7%)
방문취업(H-2)	285,342	254,950	238,880	250,381	226,322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미등록 방문취업	5,090 (1.8%)	2,315 (0.9%)	2,415 (1.0%)	2,320 (0.9%)	2,095 (0.9%)
전체(E9+H2)	561,384	534,137	518,007	530,693	503,077
미등록(E9+H2)	54,362 (9.7%)	47,882 (9.0%)	49,033 (9.5%)	49,693 (9.4%)	48,217 (9.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 년도

○ 최근 5년 체류자격별 미등록체류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증면제(B-1)[8]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비전문취업 미등록체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일반연수(D-4) 등 단기비자를 통해 취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 단기비자를 통한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음(주수인, 2020).
- 고용허가제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를 양성하는 문제가 있는 한편, 단기비자를 통해 유입되고 형성되는 비합법 노동시장 문제도 존재함. 즉, 이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체류자와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표 8〉 체류자격별 미등록체류자 추이 - 상위 5개 (2015~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증면제	56,307	26.3%	사증면제	63,319	30.3%	사증면제	85,196	33.9%	사증면제	162,083	45.6%	사증면제	176,244	45.2%
비전문취업	49,272	23.0%	단기방문	46,041	22.0%	단기방문	56,631	22.6%	단기방문	67,157	18.9%	단기방문	81,723	20.9%
단기방문	47,373	22.1%	비전문취업	45,567	21.8%	비전문취업	46,618	18.6%	비전문취업	47,373	13.3%	비전문취업	46,122	11.8%
관광통과	19,658	9.2%	관광통과	19,038	9.1%	관광통과	20,662	8.2%	관광통과	30,028	8.5%	관광통과	30,272	7.8%
거주	5,967	2.8%	선원취업	5,480	2.6%	일반연수	7,209	2.9%	일반연수	12,613	3.6%	일반연수	19,234	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 각 년도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

1) 고용허가제 개요

(1)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8) 사증면제란, 양국의 친선 및 우호 등을 위해 최대 90일 범위 내에서 단기 관광과 방문 등을 위하여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를 뜻함.

○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함께 소위 3D 업종의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며, 인력 '송출국'이었던 한국은 인력 '수신국'이 됨.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가며 정부는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지만, '연수생' 신분인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그리고 산업재해에 노출되었음.

○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전환된 것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음. 하나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그리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조직적 목소리임. 또 다른 하나는, IMF 이후 한국에 불어 닥친 '세계화' 열풍과 노동시장 유연화임. 산업연수생이라는 틀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주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제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에 이름.

- 2004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자'가 되어, 노동3권과 최저임금 그리고 산재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음.[9)]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임. 고용허용 업종은 중소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이며 규모는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11개 부처 차관)에서 국내 경제상황·노동시장 동향·불법체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함.

-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존재하는데, 이는 전체 도입규모가 결정된 후 사업장별 편중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 즉, 고용허가제는 철저히 공공에 의해 관리된다고 할 수 있음.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첫째,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임.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은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 부작용 방지 위한 내국인 우선 고용 (보충성) △이주노동자들의 국내 정주화 방지(단기순환) △노동관계법령 등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한 대우(차별금지) △인력송출 비리 방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직접 관리(투명성) △시장수요에 맞는 인력 선발 및 도입 지향(시장수요 존중 원칙) 등임(김석률·이원식, 2017; 조성혜, 2019).

- 위와 같은 고용허가제의 기본 원칙에는 내적 모순이 있음.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과 정주화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추진은 많은 반발을 낳음.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장기체류 미등록노동자(미등록 기간 4년 이상)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행했음. 이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과 구로, 안산에서 각각 농성 시위를 전개함.

방지 원칙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사업장 이동 제한, 취업활동 기간 제한)는 불가피함. 이는 내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과 서로 모순될 수 있음(김석률이원식, 2017; 조성혜, 2019).

○ 둘째, 사업장 이동 제한의 문제가 있음.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제한됨.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1년치 임금 중 30% 이상 체불이 있거나 '떠날 사업장 고용주의 승인'이 있어야 함.

- 또한, 사업장 변경 기간(3개월)과 횟수(3년간 3회)도 제한되어 있음.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과 '노동력 단기순환 정책(최대 9년8개월)' 사이에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등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셋째,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에 배태된 제도적 인종주의(institutional racism)임(김현미, 2018). 고용허가제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소수업종의 경우 도입규모가 적어 업종별 특성과 사업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소수업종 특화국가를 운영"함.

〈표 9〉 소수업종 특화국가 지정 현황

업종	특화국가명	업종	특화국가명
건설업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어업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농축산업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서비스업	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고용노동부(2019),「19년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P. 3

-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은 특정 국가(지역) 출신 노동자를 특정 직종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이주노동자라는 신분과 더불어, 노동법상 사각지대인 농축산업 특성(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등)에 이중으로 노출됨(이한숙, 2018).

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19) 분석 결과

1) 개요

○ '이민자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이하 '이민자 고용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생활 실태, 취업과 실업 현황을 파악하여 이민자와 관련된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됨(「통계법」 제18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모집단은 상주인구기준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이며, 2019년 조사 대상은 외국인(외국인등록명부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표본 1만 5천명)과 귀화허가자(외국인이었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자, 표본 5천 명)임.

○ 조사는 공통조사와 부가조사로 나뉨. 공통조사 항목은 △기본 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2017년, 2020년) △한국계 외국인(2018년, 2021년) △영주 및 귀화허가자(2019년, 2022년)를 대상으로 한 부가조사가 시행됨(〈표 10〉 참조). 이 원고에서는 공통조사 항목 중 일부 항목 내용을 분석함.

〈표 10〉 이민자 고용조사 조사항목

항목	부문/대상	주요조사항목
공통	기본 항목(40)	성별, 출생지, 종교, 국적, 학력, 배우자, 가구원 등
	고용(55)	취업, 일한 시간, 직장, 임금, 직장만족도, 한국인과 비교 등
	교육(7)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목적,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과 지원서비스 등
	주거 및 생활환경(3)	거주지 이동 유·무 등
	소득과 소비(14)	월평균 총 소득, 지출부문별 비율, 해외 송금 횟수 및 연간 송금액,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및 경험 사항 등
	자녀교육(6)	자녀교육에서 겪은 어려움, 자녀학교 참여도, 교육비 부담 정도 등
	체류사항(12)	한국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 유무 및 내용, 향후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연장 방법 등
부가	비전문취업(E-9) (16)	취업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직장에서 경험한 사항, 이전 직장 퇴사 사유 등
	유학생(D-2, D-4-1, D-4-7) (21)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 졸업 후 계획 등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한 한국계 외국인 (21)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직장에서 겪은 일, 이직 희망 여부 등
	영주(F-5)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귀화허가자 대상 (38)	한국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정도, 한국사회의 공정성, 사회경제적 지위, 소속감, 한국국적 취득 등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설명자료(2017년~2019년)

2) 주요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이주노동자 연령대는 30-39세(32.8%)와 15세-29세(30.9%) 비율이 높음. 체류자격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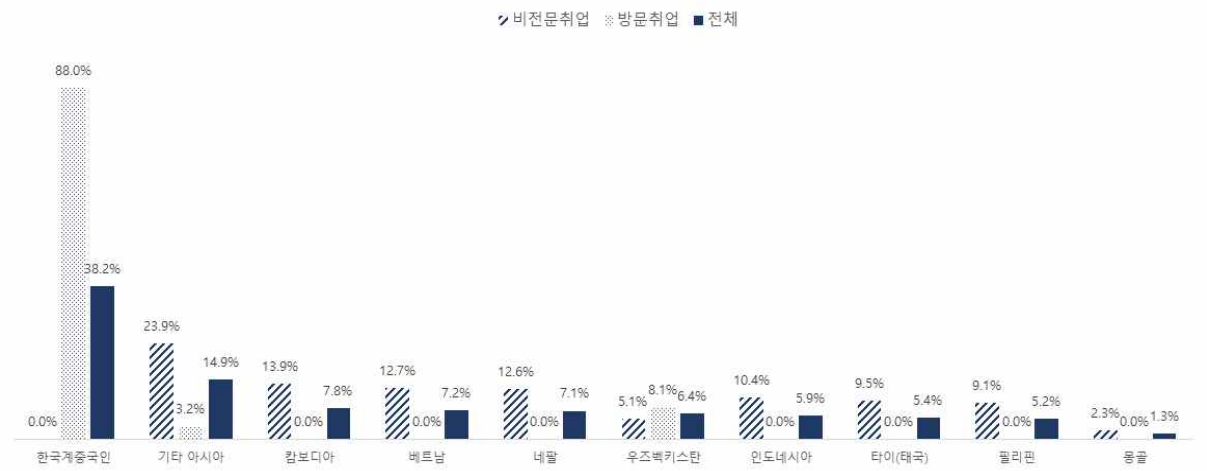
대 분포가 다른데, 비전문취업의 경우 15세-29세 비율(49.6%)이 높고, 방문취업은 50세-59세(42.6%)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 이주노동자 규모 - 체류자격 및 성별

		규모 (천 명)						비율 (%)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전문취업	남성	114	106	18	0	0	239	47.8%	44.4%	7.7%	0.0%	0.0%
	여성	15	7	0	0	0	22	68.3%	30.5%	1.3%	0.0%	0.0%
	전체	129	113	19	0	0	261	49.6%	43.3%	7.2%	0.0%	0.0%
방문취업	남성	9	28	35	47	4	124	7.0%	23.0%	28.4%	38.4%	3.2%
	여성	5	10	20	38	4	77	6.0%	13.3%	26.5%	49.3%	4.9%
	전체	13	39	56	85	8	201	6.6%	19.3%	27.7%	42.6%	3.8%
전체	남성	123	135	54	47	4	363	33.9%	37.2%	14.8%	13.1%	1.1%
	여성	20	17	21	38	4	99	19.8%	17.1%	20.9%	38.4%	3.8%
	전체	143	152	74	85	8	462	30.9%	32.8%	16.1%	18.5%	1.7%

○ 이주노동자 출신국가는 체류자격에 따라 그 양상이 매우 다름. 방문취업은 한국계중국인(88%)이 다수고, 비전문취업은 기타 아시아(23.9%) 〉 캄보디아(13.9%) 〉 베트남(27.7%) 〉 네팔(12.6%) 등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 이주노동자 특성 - 출신국가



* 기타아시아: 타이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 혼인상태는 기혼 60.4%, 비혼 39.6%로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6명이 기혼임. 비전문취업은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91.3%)가 다수고, 방문취업은 배우자와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70.3%)가 많은 편임.

〈표 12〉 이주노동자 특성 – 혼인상태,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혼인상태		배우자 한국 거주 여부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음	한국에서 따로 살고 있음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
비전문 취업	남성	53.9%	46.1%	3.3%	2.7%	94.0%
	여성	35.7%	64.3%	31.9%	21.0%	47.0%
	전체	52.3%	47.7%	5.0%	3.7%	91.3%
방문 취업	남성	67.6%	32.4%	62.5%	3.4%	34.1%
	여성	76.4%	23.6%	81.4%	2.0%	16.6%
	전체	71.0%	29.0%	70.3%	2.8%	26.9%
전체	남성	58.6%	41.4%	26.6%	3.0%	70.4%
	여성	67.4%	32.6%	75.6%	4.3%	20.2%
	전체	60.4%	39.6%	38.3%	3.3%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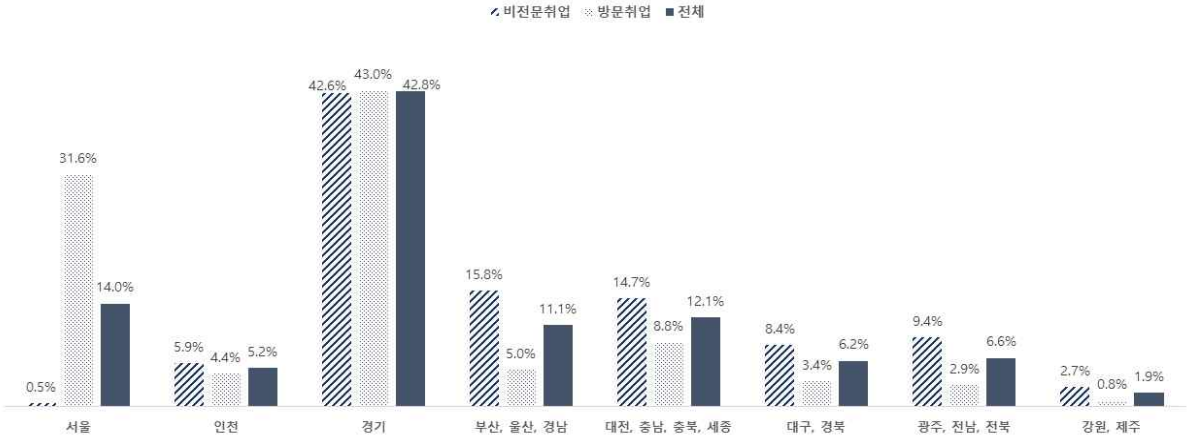
○ 이주노동자 중 대다수가 본국(96.9%)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했고, 학력은 고졸(47.4%) 〉 중졸(22.4%) 〉 대졸이상(22%) 〉 초졸 이하(8.2%) 순임. 비전문취업은 고졸(47.8%)과 대졸이상(28.7%)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문취업은 고졸(47%)과 중졸(27.1%) 비율이 높은 편임.

〈표 13〉 이주노동자 특성 – 최종학위 취득 국가, 교육 정도

		최종학위 취득 국가			교육 정도			
		한국	본국	외국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문대 포함)
비전문 취업	남성	0.1%	97.3%	2.6%	4.3%	18.8%	48.3%	28.6%
	여성	0.2%	96.4%	3.4%	9.4%	18.7%	41.7%	30.3%
	전체	0.1%	97.2%	2.7%	4.7%	18.8%	47.8%	28.7%
방문 취업	남성	0.8%	96.8%	2.4%	11.9%	25.9%	47.9%	14.3%
	여성	0.8%	96.0%	3.2%	14.1%	29.0%	45.5%	11.4%
	전체	0.8%	96.5%	2.7%	12.8%	27.1%	47.0%	13.2%
전체	남성	0.3%	97.1%	2.6%	6.9%	21.2%	48.2%	23.7%
	여성	0.7%	96.1%	3.2%	13.1%	26.7%	44.7%	15.6%
	전체	0.4%	96.9%	2.7%	8.2%	22.4%	47.4%	22.0%

○ 거주지역은 경기(42.8%)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울(14%) 〉 대전, 충남, 충북, 세종(12.1%) 〉부산, 울산, 경남(11.1%) 등 순으로 나타났음. 방문취업은 서울(31.6%) 비율이 높은 편임.

[그림 5] 이주노동자 특성 - 거주지



○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서 특징이 다름. 비전문취업의 경우 기숙사(47.7%)와 기타(31.5%)가 대부분이고, 점유형태는 무상(84.7%)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의 특징과 닿아있음(〈표 14〉 참조). 방문취업은 일반주택(84.9%)과 점유형태 전세, 월세(84.9%) 비율이 높음.

〈표 13〉 이주노동자 특성 - 거처 종류, 점유 형태

		거처 종류				점유 형태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자가	전세, 월세	무상 (회사,학교 등이 제공)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	17.1%	3.7%	47.7%	31.5%	0.6%	14.7%	84.7%
	방문취업	84.9%	7.7%	2.8%	4.6%	5.4%	84.9%	9.7%
산업	농림어업	32.5%	1.8%	23.8%	41.9%	0.5%	11.7%	87.8%
	광제조업	25.3%	4.9%	43.8%	26.0%	0.9%	27.1%	72.0%
	건설업	80.2%	6.3%	6.7%	6.8%	4.7%	79.2%	16.1%
	도소매, 음식, 숙박	82.1%	5.7%	6.6%	5.5%	5.5%	78.9%	15.6%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7.9%	38.2%	0.0%	13.9%	0.0%	100.0%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79.2%	6.1%	8.1%	6.5%	3.5%	75.4%	21.1%

* 기타: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등) 내 주택, 외국인 쉼터 등 사회복지 시설,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찜질방 등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취업(76.1%)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7%)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임.
- 방문취업은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이 거주(35%) 〉 취업(19.9%) 〉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0.2%) 등 순으로 나타났음.

[참조] 현재 지역 거주 이유

		현재 지역 거주 이유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	취업	진학	가족 또는 동료와 같이 거주	주택 구입 또는 거주 면적 확장	더 좋은 주거 환경	집세 상승	결혼	기타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	17.0%	76.1%	0.0%	5.0%	0.0%	0.3%	0.0%	0.2%	1.3%
	방문취업	10.2%	19.9%	0.0%	35.0%	3.3%	11.2%	5.0%	0.7%	14.7%
산업	농림어업	21.8%	71.0%	0.0%	5.5%	0.0%	0.3%	0.0%	0.3%	1.1%
	광제조업	15.4%	71.1%	0.0%	8.3%	0.4%	1.6%	0.7%	0.1%	2.3%
	건설업	12.7%	20.5%	0.0%	26.8%	3.1%	13.7%	5.9%	0.3%	17.1%
	도소매, 음식, 숙박	14.8%	24.4%	0.0%	32.1%	2.5%	10.2%	3.9%	1.2%	10.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6.2%	25.9%	0.0%	49.4%	4.1%	0.0%	0.0%	0.0%	4.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0.7%	25.1%	0.0%	30.4%	1.2%	12.9%	5.4%	0.7%	13.6%

○ 종사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81.6%)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12.9%) 〉 건설업(3%) 〉 도소매, 음식, 숙박(1.4%) 순임. 방문취업의 경우 건설업(29.6%) 〉 광제조업(28.7%) 〉 도소매, 음식, 숙박(26.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13.5%) 순으로 나타났음.

- 종사산업 분포는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방문취업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표 14〉 종사 산업

		산업분류						
		농림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계
비전문 취업	규모 (천 명)	34	213	8	4	0	3	261
	비율 (%)	12.9%	81.6%	3.0%	1.4%	0.0%	1.1%	100.0%
방문 취업	규모 (천 명)	2	45	47	42	1	21	158
	비율 (%)	1.0%	28.7%	29.6%	26.4%	0.7%	13.5%	100.0%
전체	규모 (천 명)	35	258	55	46	1	24	419
	비율 (%)	8.4%	61.7%	13.0%	10.9%	0.3%	5.8%	100.0%

○ 직업은 전체적으로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52.2%)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37.8%) 〉 서비스, 판매종사자(6.6%)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3.1%) 순임.

〈표 15〉 직업

		직업분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비전문 취업	규모 (천 명)	0	0	0	12	152	97	261
	비율 (%)	0.0%	0.0%	0.1%	4.8%	58.1%	37.0%	100.0%
방문 취업	규모 (천 명)	0	1	27	1	67	62	158
	비율 (%)	0.1%	0.6%	17.3%	0.4%	42.4%	39.2%	100.0%
전체	규모 (천 명)	0	1	28	13	219	159	419
	비율 (%)	0.0%	0.2%	6.6%	3.1%	52.2%	37.8%	100.0%

○ 근무지역은 전반적으로 경기(44.5%) 비율이 높은 가운데, 비전문취업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15.8%)과 대전, 충남, 충북, 세종(14.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문취업은 서울(24.4%) 비율이 높은 편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광주, 전남, 전북(26.3%)과 경기(24.3%)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경기(46.5%)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및 대전, 충남, 충북, 세종(15.1%)임. 건설업(48.6%)과 도소매, 음식, 숙박(46.3%) 역시 경기 비율이 가장 높음.

〈표 16〉 근무지

		근무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	0.5%	5.9%	42.6%	15.8%	14.7%	8.3%	9.4%	2.7%
	방문취업	24.4%	4.7%	47.5%	4.9%	10.0%	3.7%	3.5%	1.2%
성별	남성	7.1%	6.0%	43.8%	12.5%	13.0%	7.4%	7.8%	2.4%
	여성	20.5%	3.0%	47.4%	7.8%	12.6%	3.2%	4.4%	1.2%
산업	농림어업	0.0%	0.0%	24.3%	11.6%	18.0%	8.5%	26.3%	11.3%
	광제조업	0.8%	6.2%	46.5%	15.1%	15.1%	8.6%	6.5%	1.2%
	건설업	26.2%	6.9%	48.6%	4.8%	5.8%	1.6%	4.0%	2.0%
	도소매, 음식, 숙박	35.1%	4.0%	46.3%	3.9%	5.4%	1.8%	2.6%	1.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0.0%	88.0%	3.5%	4.1%	0.0%	4.4%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2.4%	4.8%	37.8%	5.4%	12.8%	3.1%	2.0%	1.8%
전체		9.6%	5.4%	44.5%	11.7%	12.9%	6.6%	7.2%	2.1%

○ 사업장 규모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명-29명(39.9%) 〉 5명-9명(20.8%) 〉 50명-599명(16.3%)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10명-29명(29%) 〉 5명-9명(24.6%) 〉 4명 이하(20.9%) 순임. 방문취업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20.9%)이 높은 편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4명 이하(43.6%)와 5명-9명(43.6%)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10명-29명(33.8%) 비율이 높은 편임. 도소매, 음식, 숙박 역시 4명 이하(38.9%)와 5명-9명(32%)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7〉 사업장 규모

		사업장 규모					
		4명 이하	5명~9명	10명~29명	30명~49명	50명~299명	300명 이상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8.4%	20.8%	39.9%	14.1%	16.3%	0.6%
	방문취업	20.9%	24.6%	29.0%	8.9%	15.4%	1.2%
산업	농림어업	43.6%	40.4%	13.2%	1.8%	1.0%	0.0%
	광제조업	3.5%	17.7%	42.4%	16.1%	19.5%	0.9%
	건설업	11.6%	24.8%	33.8%	7.2%	20.8%	1.8%
	도소매, 음식, 숙박	38.9%	32.0%	22.5%	3.7%	2.8%	0.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1%	28.3%	15.6%	0.0%	52.1%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7.1%	19.4%	28.5%	12.4%	12.0%	0.5%
전체		13.1%	22.2%	35.8%	12.1%	15.9%	0.8%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4%)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30%-50% 미만(31.8%) 〉 10%-30% 미만(20.6%) 〉 50%-80% 미만(20.3%) 순으로 나타났음. 비전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29.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은 3%에 불과함.

- 방문취업은 30%~50% 미만(22.1%) 〉 50%~80% 미만(18.4%) 〉 10% 미만(15.0%) 순임. 방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30.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은 8.3%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경우 사업체 이민자 비율 80% 이상(37.2%)과 50-80% 미만(30.2%)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소매, 음식, 숙박은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 비율(14.9%)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고, 전기, 운수, 통신, 금융은 사업체 이민자 비율 10% 미만 비율(6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사업체 이민자 비율

		사업체 이민자 비율						
		80% 이상	50%~80% 미만	30%~50% 미만	10%~30% 미만	10% 미만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허가자 없음	모르겠음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	9.3%	20.3%	31.8%	20.6%	11.5%	3.0%	3.6%
	방문취업	12.2%	18.4%	22.1%	13.2%	15.0%	8.3%	10.8%
성별	남성	9.5%	20.3%	28.9%	19.0%	12.5%	3.7%	6.1%
	여성	14.2%	16.2%	24.9%	12.7%	14.0%	10.8%	7.2%
산업	농림어업	37.2%	30.2%	11.3%	3.8%	6.6%	7.3%	3.6%
	광제조업	5.5%	18.7%	33.4%	22.1%	13.0%	2.5%	4.6%
	건설업	15.0%	23.2%	21.3%	11.8%	12.1%	5.0%	11.5%
	도소매, 음식, 숙박	12.0%	14.8%	21.9%	12.5%	17.0%	14.9%	6.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0.0%	13.9%	11.2%	63.0%	4.1%	7.9%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9.7%	14.7%	23.7%	16.2%	11.0%	10.1%	14.6%
전체		10.4%	19.6%	28.1%	17.8%	12.8%	5.0%	6.3%

○ 종사상지위는 체류자격별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남. 비전문취업은 상용 노동자(91.7%)가 다수고, 방문취업은 일용 노동자(40.5%) 〉 상용 노동자(31.4%) 〉 임시 노동자(27.3%) 분포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64.2%)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63.2%), 그리고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52%)의 경우 일용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9〉 종사상지위

		종사상지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	91.7%	7.3%	1.0%	0.0%	0.0%	0.0%
	방문취업	31.4%	27.3%	40.5%	0.1%	0.6%	0.1%
성별	남성	74.1%	11.1%	14.5%	0.1%	0.2%	0.0%
	여성	46.1%	31.4%	22.1%	0.0%	0.2%	0.1%
산업	농림어업	69.9%	22.5%	7.6%	0.0%	0.0%	0.0%
	광제조업	90.1%	8.0%	1.9%	0.1%	0.0%	0.0%
	건설업	17.2%	17.8%	64.2%	0.0%	0.9%	0.0%
	도소매, 음식, 숙박	38.3%	37.1%	23.6%	0.0%	0.7%	0.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4%	28.3%	63.2%	0.0%	4.1%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0.1%	27.2%	52.0%	0.0%	0.6%	0.0%
전체		69.0%	14.8%	15.9%	0.0%	0.2%	0.0%

(3) 노동시간, 임금, 일의 속성

○ 주당 취업시간(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1.9%)이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50-60

시간 미만(26.9%) 〉 60시간 이상(15.2%)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되며 특히 비전문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34.2%)이 매우 높음.

- 주업 노동시간과 부업 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결과이지만, 특히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41.1%)과 광제조업(42.6%)은 10명 중 약 4명이 5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도소매, 음식, 숙박(41.2%)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55.4%)은 60시간 이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0〉 주당 취업시간

		주당 취업시간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0.0%	0.2%	1.3%	54.3%	31.1%	13.1%
	방문취업	1.9%	4.4%	7.2%	47.9%	19.9%	18.6%
산업	농림어업	0.0%	0.5%	5.5%	53.0%	28.5%	12.6%
	광제조업	0.1%	0.2%	0.9%	56.2%	30.4%	12.2%
	건설업	1.7%	5.5%	8.2%	55.4%	19.8%	9.5%
	도소매, 음식, 숙박	2.5%	4.8%	7.0%	25.1%	19.5%	41.2%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11.2%	12.0%	21.4%	0.0%	55.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3%	6.7%	11.3%	47.2%	18.5%	12.9%
전체		0.7%	1.8%	3.5%	51.9%	26.9%	15.2%

* 주당 취업시간은 주업, 부업 모두 포함함.

[참조] 주당 취업시간 - 체류자격 및 성별

		주당 취업시간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비전문취업	남성	0.0%	0.2%	1.3%	53.5%	31.7%	13.3%
	여성	0.0%	0.0%	2.0%	62.3%	24.2%	11.6%
방문취업	남성	1.2%	4.2%	7.3%	52.2%	21.9%	13.2%
	여성	3.3%	4.7%	7.1%	39.9%	16.3%	28.8%

○ 월 평균임금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미만(62.2%)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0만원-200만원(27%) 〉 300만원 이상(10.8%) 순임. 방문취업은 200만원~300만원 미만(52.5%) 〉 100만원~200만원 미만(24.8%) 〉 300만원 이상(19.3%) 〉 100만원 미만(3.4%) 순임.

- 도소매, 음식, 숙박(5.7%)과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7.7%)는 100만원 미만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농림어업은 100만원-200만원 미만(69.8%) 비율이 높음. 건설업의 경우 300만원 이상(39.3%)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월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0.0%	27.0%	62.2%	10.8%
	방문취업	3.4%	24.8%	52.5%	19.3%
산업	농림어업	0.3%	69.8%	28.3%	1.5%
	광제조업	0.3%	21.4%	65.8%	12.5%
	건설업	0.0%	16.3%	44.4%	39.3%
	도소매, 음식, 숙박	5.7%	29.3%	61.3%	3.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27.8%	58.9%	13.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7.7%	30.1%	51.3%	10.9%
전체		1.3%	26.2%	58.5%	14.0%

[참조] 월 평균임금 - 체류자격 및 성별

		월 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비전문취업	남성	0.0%	23.6%	64.9%	11.5%
	여성	0.0%	63.8%	32.8%	3.4%
방문취업	남성	1.3%	19.8%	49.9%	28.9%
	여성	7.2%	34.1%	57.3%	1.5%

○ 현재 담당업무 직무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65.7%) 〉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28.7%)”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1.6%)” 등 순임.

〈표 22〉 담당업무 직무수준

		담당업무 직무수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65.9%	29.2%	3.4%	1.4%
	방문취업	65.3%	27.9%	5.0%	1.9%
산업	농림어업	89.2%	9.5%	1.0%	.3%
	광제조업	61.7%	32.4%	4.2%	1.7%
	건설업	54.0%	38.1%	5.5%	2.3%
	도소매, 음식, 숙박	82.7%	12.8%	3.1%	1.3%
	전기, 운수, 통신, 금융	95.4%	4.6%	0.0%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6.8%	27.1%	4.8%	1.3%
전체		65.7%	28.7%	4.0%	1.6%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9)」에 의하면, 내국인은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수준으로 채용했고,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수준으로 채용했음. 교육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외국인 채용은 주로 현장 경력 및 자격증이 요구되지 않는 1수준(55%)과 1년 경력 미만의 경력이 요구되는 2-1수준(22%)에서 채용이 이루어졌음.

- 특히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은 2-1수준(36.9%) 〉 1수준(26%) 순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데에 비해 외국인은 1수준(69.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도소매업 역시 외국인은 1수준(81.7%)에서 주로 채용됨. 단, 건설업 외국인 채용의 경우 2-1수준(62.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참조] 직능수준별 내국인·외국인 채용인원 – 외국인 다수 채용 상위 10개 업종

	내국인					외국인				
	1수준	2-1수준	2-2수준	3수준	4수준	1수준	2-1수준	2-2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24.3%	30.5%	17.2%	22.9%	5.1%	55.0%	22.0%	6.1%	13.7%	3.2%
제조업	26.0%	36.9%	16.2%	19.1%	1.7%	69.8%	20.3%	6.4%	2.3%	1.1%
교육 서비스업	1.9%	4.3%	7.8%	49.2%	36.8%	0.7%	1.5%	3.4%	75.1%	19.3%
건설업	37.4%	28.7%	16.6%	15.9%	1.4%	30.7%	62.7%	6.3%	0.2%	0.1%
도소매업	23.5%	35.8%	19.4%	20.9%	0.4%	81.7%	7.1%	0.0%	10.0%	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51.4%	32.4%	10.1%	5.9%	0.2%	24.1%	4.7%	10.0%	61.2%	0.0%
숙박 및 음식점업	44.9%	43.4%	8.0%	3.4%	0.3%	56.0%	35.9%	5.6%	2.5%	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	13.5%	18.2%	59.1%	7.1%	0.0%	0.0%	29.7%	41.9%	2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2%	33.3%	17.9%	13.1%	1.5%	2.0%	98.0%	0.0%	0.0%	0.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36.7%	30.9%	17.6%	14.8%	0.0%	85.8%	14.2%	0.0%	0.0%	0.0%
운수업	22.5%	47.9%	16.9%	12.3%	0.5%	49.2%	22.9%	0.0%	27.9%	0.0%

원자료: 고용노동부(2019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직능수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 또는 채용한 인력의 직무능력으로 경력, 혹은 자격증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
1수준: 현장 경력 없어도 됨. 자격증 취득 수준 요하지 않음. (중졸 이하 수준의 업무)
2-1수준: 1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고졸 수준의 업무)
2-2수준: 1~2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3수준: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4수준: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박사 수준의 업무)

- 전반적으로 외국인 미채용율(4.9%)에 비해 내국인 미채용율(11.3%)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을 구하는 것보다 '내국인력'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국인 미채용율보다 내국인 미채용율이 높음.

- 즉, 이주노동자 중 다수가 현재 업무를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10) 미채용율은 사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자 했으나 충원하지 못한 인원(미채용인원)을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임.

일"(65.7%)"로 인식하고 있고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내국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일자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참조] 직능수준별 내국인·외국인 미채용율 - 외국인 다수 채용 상위 10개 업종 (단위: %)

	내국인						외국인					
	1수준	2-1 수준	2-2 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1수준	2-1 수준	2-2 수준	3수준	4수준	전체
전체	11.4	12.1	13.0	10.0	4.0	11.3	5.4	5.3	0.6	5.2	0.5	4.9
제조업	19.2	13.4	18.8	17.5	17.0	16.7	6.8	8.2	0.7	9.1	0.7	6.7
교육 서비스업	1.8	7.8	20.3	2.4	0.9	3.8	0.0	0.0	0.0	1.0	0.0	0.7
건설업	1.0	2.9	5.4	4.9	4.0	3.0	2.5	0.0	0.0	0.0	0.0	0.8
도소매업	6.8	6.7	12.6	16.0	7.2	10.0	-2.4	0.0		0.0	0.0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3.2	5.9	7.6	4.4	19.0	4.7	9.6	0.0	0.0	0.0		2.5
숙박 및 음식점업	6.2	8.0	14.6	12.4	11.1	7.9	-5.8	7.0	2.8	11.4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	5.6	8.6	10.0	7.1	8.9			0.0	47.4	2.6	27.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8	6.1	1.2	12.3	0.9	4.3	0.0	0.0				0.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7.5	3.7	9.6	4.6	0.0	6.3	9.1	0.0				7.9
운수업	59.8	47.0	18.7	7.9	0.0	44.7	0.0	15.3		0.0		4.0

원자료: 고용노동부(2019년 하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미채용율: [(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직능수준: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 또는 채용한 인력의 직무능력으로 경력, 혹은 자격증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수준

1수준: 현장 경력 없어도 됨. 자격증 취득 수준 요하지 않음. (중졸 이하 수준의 업무)

2-1수준: 1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고졸 수준의 업무)

2-2수준: 1~2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산업기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전문대졸 수준의 업무)

3수준: 2년~10년 미만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대졸 또는 석사 수준의 업무)

4수준: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필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 (박사 수준의 업무)

(4) 사회보험과 경제적 어려움

○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64.9%) 〉 국민연금(60.5%) 〉 산재보험(22.3%) 〉 건강보험(16.3%) 순임. “가입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이거나(고용보험) 상호주의(국민연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표 24〉 참조). 전반적으로 비전문취업보다 방문취업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음.

〈표 23〉 4대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미가입	모름	가입	미가입	모름	가입	미가입	모름	가입	미가입	모름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30.4%	59.8%	9.8%	91.0%	6.3%	2.7%	28.3%	57.5%	14.2%	91.2%	6.8%	2.0%
	방문취업	17.3%	73.4%	9.4%	44.9%	48.8%	6.3%	24.9%	71.4%	3.7%	62.5%	35.2%	2.3%
산업	농림어업	25.5%	61.8%	12.7%	59.9%	33.6%	6.5%	7.0%	78.7%	14.3%	53.4%	42.3%	4.3%
	광제조업	30.1%	60.4%	9.5%	90.5%	6.6%	2.9%	35.3%	52.2%	12.6%	93.5%	4.7%	1.9%
	건설업	13.5%	75.5%	11.0%	44.9%	48.3%	6.8%	15.2%	79.8%	5.0%	63.7%	34.3%	2.0%
	도소매, 음식, 숙박	24.0%	70.4%	5.6%	45.9%	50.8%	3.3%	37.9%	58.0%	4.2%	72.1%	26.3%	1.6%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87.5%	12.5%	25.9%	74.1%	0.0%	4.1%	95.9%	0.0%	46.7%	53.3%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2%	82.3%	11.5%	32.1%	59.5%	8.4%	14.3%	82.1%	3.7%	57.6%	41.6%	0.8%
전체		25.4%	64.9%	9.6%	73.7%	22.3%	4.0%	29.3%	60.5%	10.3%	81.7%	16.3%	2.0%

〈표 24〉 고용허가제 4대보험 현황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당연적용	임의가입	당연적용	상호주의* (의무가입 대상이나,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 100%	근로자 0.65%, 사업주 0.9~1.5	근로자 3.06%, 사업주 3.06%	근로자 4.5%, 사업주 4.5%
보험료 산출	업종별로 상이 (임금총액의 0.7~32.3%)	표준보수월액 x 요율	표준보수월액 x 6.12%	표준보수월액 x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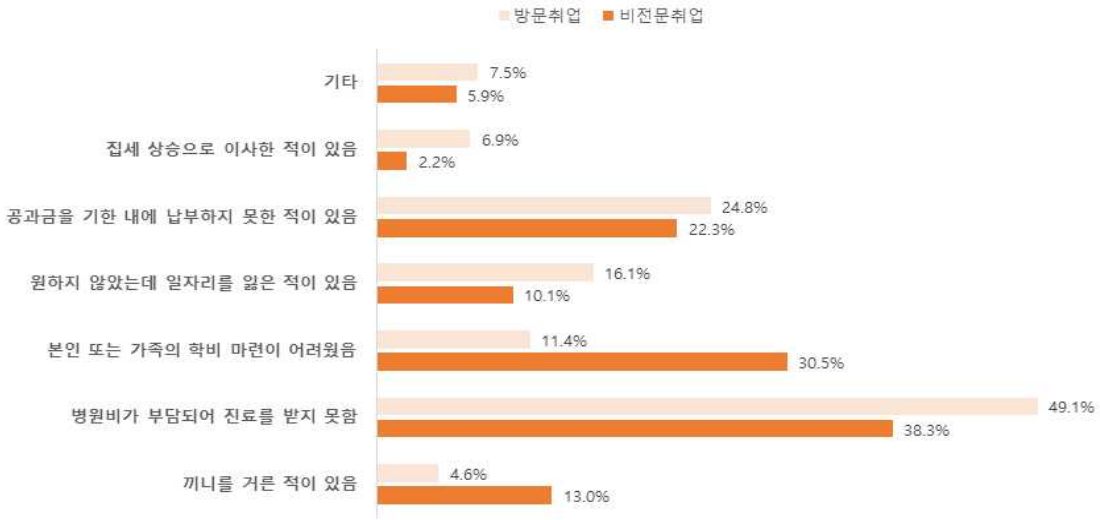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3/3/2/3/1)

*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단 (3개국)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 키르키즈스탄,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6개국)
적용제외국: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전체 8.8%, 비전문취업 3.5%, 방문취업 15.7%).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38.3%)과 비전문취업(49.1%) 모두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확인됨.

- 방문취업은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 있음”(24.8%) 〉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적 있음”(16.1%) 〉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11.4%) 순이고, 비전문취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30.5%) 〉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22.3%) 〉 “끼니를 거른 적이 있음”(13%) 순임.

[그림 6] 경제적 어려움 경험 (복수응답)



5. 소결

○ 2019년 하반기 기준, 6만 6,221개 사업장에서 21만 8,58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한국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약 1%의 비중으로, 미등록체류자를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임.

○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2,524,6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에 달하고 있음. 이 중 고용허가제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503,077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19.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법무부, 2020)

- 이주노동자 수는 2011년에 비해 2019년 약 3만 4,586명이 감소했음. 비전문취업(E-9)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나, 방문취업(H-2)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비전문취업(E-9)은 남성(91.7%)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방문취업(H-2)의 경우 남성 60.3%, 여성 39.7%임.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 성비는 남성 77.6%, 여성 22.4%임. 한편 결혼이민(F-6)은 여성 81.5%, 남성 18.5%임. 즉, 남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성별화된 이주 양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사회에서는 흔히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라고 할 때 이주노동자를 상기하나,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최근 5년 체류자격별 미등록체류자 추이를 살펴보면 사증면제(B-1)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비전문취업 미등록체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일반연수(D-4) 등 단기비자를 통해 취업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고용허가제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자체가 '불법체류자(미등록체류자)'를 낳는 문제가 있는 한편, 단기비자를 통해 유입되고 형성되는 비합법 노동시장 문제도 존재함. 즉, 이주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등록체류자와 비합법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이주노동자의 거처 종류와 점유형태는 체류자격과 산업에 따라서 특징이 다름. 비전문취업의 경우 기숙사(47.7%)와 기타(31.5%)가 대부분이고, 점유형태는 무상(84.7%) 비율이 매우 높음. 이는 농림어업과 광제조업의 특징과 닿아있음. 방문취업은 일반주택(84.9%)과 점유형태 전세, 월세(84.9%) 비율이 높음.

- 현재 지역 거주 이유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취업(76.1%)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 변경 또는 회사의 이사(17%)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의 지역에 따라 거주지가 정해지는 것임.

○ 종사산업은 비전문취업의 경우 광제조업(81.6%)이 다수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12.9%) 〉 건설업(3%) 〉 도소매, 음식, 숙박(1.4%) 등 순임. 방문취업의 경우 건설업(29.6%) 〉 광제조업(28.7%) 〉 도소매, 음식, 숙박(26.4%)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13.5%)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종사산업 분포는 비전문취업은 취업 가능 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한편, 방문취업은 분야 및 산업 제약이 덜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가 발급된 사업장에 취업 가능하다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

○ 근무지역은 전반적으로 경기(44.5%) 비율이 높은 가운데, 비전문취업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15.8%)과 대전, 충남, 충북, 세종(14.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문취업은 서울

(24.4%) 비율이 높은 편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광주, 전남, 전북(26.3%)과 경기(24.3%) 비율이 높고, 광제조업은 경기(46.5%)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부산, 울산, 경남 및 대전, 충남, 충북, 세종(15.1%)임. 건설업(48.6%)과 도소매, 음식, 숙박(46.3%) 역시 경기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장 규모는 비전문취업의 경우 10명-29명(39.9%) 〉 5명-9명(20.8%) 〉 50명-599명(16.3%) 등 순이고, 방문취업은 10명-29명(29%) 〉 5명-9명(24.6%) 〉 4명 이하(20.9%) 등 순임. 방문취업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20.9%)이 높은 편임.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10.4%)은 일하고 있는 사업체 내 이민자 비율이 80% 이상임. 비전문 취업의 경우 30%-50% 미만(31.8%) 〉 10%-30% 미만(20.6%) 〉 50%-80% 미만(20.3%) 등 순으로 나타났음. 비전문취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사업체 이민자 비율 50% 이상(29.6%)이고, “함께 일하는 외국인 및 귀화 허가자 없음”은 3%에 불과함.

○ 주당 취업시간(노동시간)은 40-50시간 미만(51.9%)이 절반 정도이고, 그 다음으로 50-60시간 미만(26.9%) 〉 60시간 이상(15.2%) 등 순임. 즉,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비전문취업은 50시간 이상 비율(34.2%)이 매우 높음.

- 주업 노동시간과 부업 노동시간을 모두 합한 결과이지만, 특히 비전문취업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성적으로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현재 담당업무 직무수준은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65.7%) 〉 “약간의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28.7%)” 〉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4%) 〉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1.6%)” 등 순임.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9)」에 의하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낮은 직능수준에서 주로 채용이 이루지는 바, 한국의 노동시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내국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직능 수준을 요구하는) 외국인 일자리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64.9%) 〉 국민연금(60.5%) 〉 산재보험(22.3%) 〉 건강보험(16.3%) 순임. “가입여부 모름”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미가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과 달리 임의가입이거나(고용보험) 상호주의(국민연금)를 따르고 있기 때문임. 전반적으로 비전문취업보다 방문취업의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음.

○ 이주노동자 10명 중 약 1명이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전체 8.8%, 비전문취업 3.5%, 방문취업 15.7%).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38.3%)과 비전문취업(49.1%) 모두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비율이 가장 큰 것이 확인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각국의 국의 이주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님. 국가인권위원회(2020)에 의하면 이주민 10명 중 약 7명(73.8%)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제(30.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오는 재난문자(29.8%),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코로나19 관련 안내·상담(22.8%), △공적 마스크 구입 배제’(16.6%) 등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에서 차별당했음.

- 산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을 우려하는 한편,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또다시 가시화 됐음.[11]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부상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담지하고 있던 위험 중 하나였음.

○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농가 산재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의무 가입, 그리고 이주노동자 취업활동 기간 일시적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을 발표했음. 정책적 논의의 흐름이 “인력이 모자란 산업현장에 이주노동자를 투입” 일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이주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음.

- 한국에서는 이미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하고 있음. 이미 산적해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별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정책적 논의와 개입이 필요함.

11) 연합뉴스(2021.01.04.), 「[외국인 수용책 이대로 좋은가] ③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19,「19년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2020,「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 보도자료(2020.12.24.).

김석률·이원식. 2017,「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인권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용허가제의 내용을 중심으로」,《사회복지법제연구》, 8(1), pp. 231-249.

김지혜. 2020,「코로나19 이후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 조사결과」,『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국가인권위원회, pp. 7-26.

김현미. 2018,「정책과 제도에 투영된 인종차별」,『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보고대회 자료집, pp. 25-32.

이주와인권연구소. 2019,『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주.

이창원·최서라·오경석 외. 2015,「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IOM이민정책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도 인권상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이한숙. 2018,「농총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강제노동」,『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보고대회 자료집, pp. 69-76.

장명선·오경석·우삼렬 외. 2017,「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조성혜. 2019,「외국인고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규제와 보호를 중심으로」,《서울법학》, 27(3), pp. 233-287.

주수인. 2020,「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월간 노동리뷰(2020년 4월호》, PP. 50-62.

차용호. 2017,「외국인 입국정책과 고용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소고: 비자(visa)의 '정책조정수단'과 '새로운 거버넌스' 적용 모색」,《이민과 통합(2017.7.)》, pp. 159-198.

최서리. 2018,「국내 외국인선원(E-10) 체류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18-03)

EPS 외국인고용지원 홈페이지 (https://eps.hrdkorea.or.kr/e9/user/employment/employment.do?method=employGuidLabor)

<부표>

〈부표 1〉 배우자 체류자격 - 체류자격 및 성별

		규모 (천 명)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D-4-1, D-4-7)	재외동포 (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 (F-2, F-6)	기타
비전문취업	남성	114	106	18	0	0	239	47.8%	44.4%
	여성	15	7	0	0	0	22	68.3%	30.5%
	전체	129	113	19	0	0	261	49.6%	43.3%
방문취업	남성	9	28	35	47	4	124	7.0%	23.0%
	여성	5	10	20	38	4	77	6.0%	13.3%
	전체	13	39	56	85	8	201	6.6%	19.3%
전체	남성	123	135	54	47	4	363	33.9%	37.2%
	여성	20	17	21	38	4	99	19.8%	17.1%
	전체	143	152	74	85	8	462	30.9%	32.8%

〈부표 2〉 학력 - 체류자격 및 산업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전문대포함)
비전문취업	농림어업	9.8%	24.6%	47.5%	18.1%
	광제조업	3.7%	18.0%	47.9%	30.4%
	건설업	9.4%	18.3%	49.6%	22.6%
	도소매, 음식, 숙박	3.9%	20.6%	30.7%	44.8%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0.0%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6.3%	10.3%	63.6%	19.8%
방문취업	농림어업	24.2%	60.8%	15.1%	0.0%
	광제조업	10.7%	23.5%	43.7%	22.1%
	건설업	10.7%	26.3%	51.9%	11.1%
	도소매, 음식, 숙박	11.3%	30.8%	50.3%	7.6%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3.5%	78.3%	18.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9.9%	21.4%	49.0%	9.7%
전체	농림어업	10.4%	26.2%	46.1%	17.3%
	광제조업	4.9%	19.0%	47.1%	29.0%
	건설업	10.5%	25.2%	51.6%	12.7%
	도소매, 음식, 숙박	10.7%	30.0%	48.7%	10.6%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3.5%	78.3%	18.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8.3%	20.1%	50.7%	10.9%

〈부표 3〉 거주지 - 체류자격 및 산업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비전문 취업	전체	0.5%	5.9%	42.7%	15.8%	14.7%	8.3%	9.4%	2.7%
	농림어업	0.0%	0.0%	23.4%	12.1%	18.0%	8.5%	26.2%	11.8%
	광제조업	0.4%	6.7%	45.8%	16.4%	14.3%	8.4%	6.9%	1.0%
	건설업	3.8%	7.6%	40.6%	17.9%	14.4%	4.7%	5.7%	5.2%
	도소매, 음식, 숙박	3.2%	3.3%	50.7%	9.2%	12.9%	5.7%	10.7%	4.3%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0.0%	10.2%	36.8%	17.1%	8.7%	11.5%	6.5%	9.2%
방문 취업	전체	31.0%	3.9%	43.2%	4.7%	9.4%	3.6%	3.3%	0.8%
	농림어업	0.0%	0.0%	41.0%	0.0%	20.7%	8.1%	30.2%	0.0%
	광제조업	8.1%	3.7%	46.1%	8.9%	18.1%	9.3%	5.0%	0.9%
	건설업	45.8%	4.4%	39.8%	2.3%	2.9%	0.8%	2.9%	1.0%
	도소매, 음식, 숙박	40.5%	3.3%	44.1%	3.4%	4.7%	1.4%	1.9%	0.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0.0%	88.0%	3.5%	4.1%	0.0%	4.4%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2.5%	5.1%	40.5%	4.0%	13.9%	2.1%	1.2%	0.6%
전체	전체	12.0%	5.1%	42.9%	11.6%	12.7%	6.6%	7.1%	2.0%
	농림어업	0.0%	0.0%	24.1%	11.6%	18.1%	8.5%	26.3%	11.3%
	광제조업	1.8%	6.2%	45.8%	15.1%	15.0%	8.6%	6.6%	1.0%
	건설업	39.8%	4.8%	40.0%	4.5%	4.5%	1.4%	3.3%	1.6%
	도소매, 음식, 숙박	37.5%	3.3%	44.6%	3.9%	5.4%	1.8%	2.6%	1.0%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0%	0.0%	88.0%	3.5%	4.1%	0.0%	4.4%	0.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28.8%	5.7%	40.1%	5.5%	13.3%	3.2%	1.8%	1.6%